



-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역설계 -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

“대학 입시 전쟁이 끝나니 군대문제가 눈 앞에 왔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부모의 답답한 심정 -



병 무 청

인 사 말

0011010001 대한민국의 20대 남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군대일 것입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복학생 선배들이 군대 시절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병역을 앞둔 젊은이는 한번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과 막연한 군입영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병무청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역설계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징병검사부터 예비군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 이행시기별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의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본인이 직접 입영시기를 선택하는 방법과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지원요령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안내서가 부모님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 자녀의 군 복무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본인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 병역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젊은이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

병무청장 백항병

☞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군대를 간다!

-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1, 2학년때 제일 많이 입영한다.
- 현역병 연령별 입영현황

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이상
256,171	41,219	150,263	42,406	11,442	4,586	6,255

└ 74.7% ┘

☞ 내 친구들이 하나, 둘 조기 입영하는 이유는?

- 대한민국의 멋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
- 대학복학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입영 선호시기에 입영 희망
- 대학의 전공, 자격증과 유사한 부분의 실전 경험을 쌓고 싶어서

나라를 지키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 군대 입영은 왜 두려운가?

- 부모님 등 가족과 헤어져 잘 생활할 수 있을까?
- 혼자 낯선 사람과 잘 생활할 수 있을까?
- 사회와 단절된 군부대 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을까?
-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는가 ? ”

☞ 군생활을 사회와 연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대학전공과 연계한 입영
- 사회경력(자격증)과 연계한 입영
- 군생활하면서 학점 이수 할 수 있는 분야, 각종 기술자격증 취득 등
- 군생활도 하고 학비도 마련할 수 있는 유급지원병 지원
- 맞춤형특기병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사회진출시 해당분야에서 취업가능

☞ 그렇다면 병역의무 이행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 병역의무이행은 어떻게 할까?

- 복학시기를 맞추기 위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 매년 12월 중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각 언론사 홍보
- 나의 전공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
 - 매월 병무청에서 각 군별로 모집“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활용 지원
-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 – 편입절차 병무청 홈페이지 활용
-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편입절차 병무청 홈페이지 활용
- 보충역 처분자는 **“사회복무요원”**복무



01 _ 징병검사

- 06 징병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 10 질병 발생, 악화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 12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02 _ 현역병 입영

- 14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15 대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 16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7 현역병 입영 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 18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가 몇 종류 있는가?
- 19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 20 맞춤특기병이란?
- 21 육군 유급지원병이란?
- 22 현역 모집병 중 카투사에 지원 입영하고 싶은데 방법은?
- 23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질병사유로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 24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 24 입영 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 25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5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03 _ 보충역

- 28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란?
- 29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 30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은?
- 3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했을 때에는?
- 32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 34 전문/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자격기준은?
- 35 전문/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 36 전문/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 군사훈련소집은?
- 37 전문/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언제 할 수 있는가?
- 38 전문/산업기능요원군구 중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04 _ 예비군 훈련

- 40 예비군 훈련은?



05 _ 기타

- 44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 45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 46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01_ 징병검사

- 징병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 질병 발병, 악화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징병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징병검사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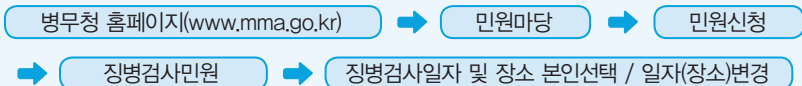
-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 과목별 전문의에 의해 실시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군 복무에 필요한 적성분류

• 2014년도 징병검사 대상

-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1994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징병검사 신청방법

-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일자(장소)변경



※ 본인선택자 징병검사 통지서 출력은 본인선택 시 입력한 메일 주소에서 출력

-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장소 선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후 본인선택(변경) 가능
 - 2014년도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전까지 신청 또는 변경 가능
- 2014년도 징병검사 기간 : 2014. 01. 27 ~ 11. 25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신분증 제시)

-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임의 지정 통지

•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 - 징병검사일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조회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징병검사민원

징병검사 기일연기

• 내용

-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징병검사를 기일연기 할 수 있는 제도

• 내용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공고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일자 또는 통지된 징병검사 일자보다 늦은 날로 본인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출원시기

- 징병검사기일 5일전까지

• 구비서류

- 징병검사·병역이행 일자변경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 진산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 참고사항

-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징병검사 준비물

대 상	지참물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병사용학력증명서(최종학교의 장 발행) • 초등학교졸업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학력진술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병무청 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단, 수술 등의 경우는 비지정병원 가능) 또는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수형자	•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수용증명서
전·공상자 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징병검사 과정

• 징병검사 실시

-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결과와“질병상태문진표”및“지참 진단서”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로 구분, 실시
- 신체 건강한 자 : 기본검사 → 신체등위판정
- 정밀검사자 : 기본검사 → 해당과목 정밀검사 → 신체등위판정

• 징병검사 순서

징병검사 대상등록(사진등록) 및 신상명세서 작성 → 심리검사 → 임상병리검사 → 방사선 촬영
→ 혈압측정 → 신장체중 측정 → 시력 측정 → 각 과별 신체검사(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
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위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소요시간 : 3~4시간 정도(오전반 08:00, 오후반 13:00)

병역처분기준

신체등위 학 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학	현 역			보충역	제2 국민역	병역 면제	재 신체검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이하							

• 신체등위판정

- 신체등위 1~3급 : 현역
- 신체등위 4급 : 보충역
- 신체등위 5급 :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 신체등위 6급 : 병역면제(군복무면제)
- 신체등위 7급 : 재신체검사 대상(2년이내 확정 처분)





질병 발생, 악화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 ※ 신청제한 :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6월이내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역처분변경 신청한 사람

• 신청방법

- 방 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재신체검사, 면제, 감면 신청」
-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기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신청

• 신청서류

- 병역처분변경신청서(민원실 비치)
- 병사용진단서(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 수술경력자와 1개월이상 입원치료자,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 병원 병사용진단서도 가능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방사선필름 등 질병증빙자료 지참
- 학력증명서(학력변동자에 한함)

• 전체 지정병원 목록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재징병검사

• 재징병검사 대상(병역법 제14조의 2)

- 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09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14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10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11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16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12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17년 재징병검사 대상

• 재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바뀔 경우, 바뀐 병역처분으로 입영하게 됨 (보충역 → 현역대상 등)

- 재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함
- 국외체재·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 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재징병검사 제외대상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입영하지 않을 경우 재징병검사 대상)
※ 무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부모 등의 전상·공상,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검사시기

- 지방병무청장이 검사일자를 정하여 실시함

확인신체검사

• 관련규정 :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 사유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한 경우
- 정신과 질환 사유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한 경우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 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 경찰청 및 유관기관 조회 결과 확인사항 중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기록,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

• 주요내용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신체등위만 판정
- 신체등위가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30일 이내 소명 기회 부여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실시
- 병역면탈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 기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의무부와 실시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

❖ 제도개요

-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41호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훈령 제1097호, 2013.4.19.)

❖ 『특별사법경찰권』적용 직무

- 병역기피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단속(병역법 제86조)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의 대리행위 단속(병역법 제87조 제1항)

❖ 기대 효과

-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신체검사 현장에서 병역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확보 등 사후 추적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정착



02_ 현역병 입영

-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 대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
-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현역병 입영 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
-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가 몇 종류 있는가 ?
-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
- 맞춤특기병이란 ?
- 육군 유급지원병이란 ?
- 현역 모집병 중 카투사에 지원 입영하고 싶은데 방법은 ?
-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질병사유로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
-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
- 입영 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
-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 특수병과(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현역병 입영자격 및 시기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 3급자로서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 입영이 원칙
 -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자는 대학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연기
 - 다만, 대학 재학 연기중에 입영을 원할 경우 『재학생 입영원』을 신청하거나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통해서만 입영 가능

입영하는 시기 선택

- 재학생 입영원(익년도 입영월 신청)
 - 대상 : 각급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 → 재학생입영신청
- 입영일자 본인선택(추첨)
 - 개요 :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일자 선택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입영일자 결정
※부대는 입영일자 결정시 전산 자동결정, 추가 공석 발생시 선착순에 의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실시
 - 대상 : 고졸이하자, 각급학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 → 입영일자 본인선택
※“고졸이하 및 졸업예정자”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지않은 사람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함(재학연기자는 연중 선택 가능)
- 육·해·공군·해병대 모집병 지원
 - 지원서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조회
 - 병무청홈페이지 → 현역병입영·대체복부 → 입영일자/부대조회
- 현역입대 통지서 받는방법/시기
 - 받는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받는시기 : 입영일 45일전에 본인에게 송부

현역병의 복무기간

- 육군, 해병대 병 : 21개월, 해군 병 : 23개월, 공군 병 : 24개월

대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연기

• 대상학교

-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상급학교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 대학원(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연수기관 : 사법연수원
 -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전산원 재원중인 자는 비대상

• 학교별 제한연령

고 등 학 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 법 연 수 원
	2 년 제	3 년 제	4 년 제	5 년 제	6 년 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석사과정				박사 과정		
							2 년 제	2년 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28 세	22 세	23 세	24 세	25 세	26 세	27 세	26 세	27 세	28 세		28 세	28 세	26 세

- 졸업,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입영통지

입영연기 절차

-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교고는 시·도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적보유자 명부를 송부하면 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직권 입영연기 처리
 - ➔ 입영연기 처리 전 입영통지된 사람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연기

제한연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현재년도(2014년)에서 출생년도를 뺀 연령으로서,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함

대학재학중 군입영을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거나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해야함

대학생이 장기간 입영 대기하지 않으려면?

-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이 결정되었거나, 모집병에 최종합격한 이후라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휴학하여야 함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영 연기제도 [입영통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재학생 입영 연기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 포함)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기

• 국외 입영 연기

- 24세이하자 : 출국일부터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연기
- 25세이상자 : 국외여행허가자는 허가기간까지 연기
- 국외이주자, 영주권자 등은 37세까지 연기

입영일자 연기제도

[확정된 입영일자(입영통지된 경우)를 본인의 원에 의하여 연기하는 제도]

- 질병,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대학입시, 각군 모집응시, 각급학교 졸업예정 등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일 범위에서 연기



자세한 연기사유별 연기기간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입영기일 연기

- 입영기일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연기 기간을 합하여 2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기횟수는 5회까지만 가능함
-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됨.
단,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전까지 취소 가능

• 고졸이하자 취업연기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중인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및 단시간 임시직 취업자 등은 제외

• 연기원 신청방법

- 입영일 5일전까지 입영기일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해당지방병무청에 제출 : 인터넷, 방문, 팩스로 신청

현역병 입영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주의할 사항

- 입영통지서는 이메일에서 3부를 출력, 1부는 입대시 지참, 1부는 대학휴학시 학교에 제출, 1부는 휴대폰해지시 해당 통신사 제출
※ 등기로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3부를 복사하여 사용
-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지양
–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음
※ 입영 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
- 몸이 아픈 사람은 입영기일연기를 신청하고 치료 후 입영하시기 바람
- 두발은 3cm 스포츠형, 복장은 간소복으로 입영
-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세면도구, 바느질세트, 반창고 등)은 입영 당일 부대에서 각 개인에게 지급하므로, 부대 주변 잡상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제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입영후 현금카드, 휴대폰전화는 사용 불가하며 1만원 이하의 소액은 휴대 가능

준비물

- 필수
– 입영통지서 및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 선택
– 징병검사이후 취득한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나라사랑카드란?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 시 발급받아 징병검사 후부터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드리는 각종 여비 및 급여를 온라인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입니다.

입영한 자녀의 휴대폰 해지를 위한 방법은?

- 입영통지서 복사본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통신사에 제출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가 몇 종류 있는가?

육군 모집분야

- 기술행정병(행정PC운용병 등 264개 특기)
 - 다양한 기술자격·면허, 전공, 경력과 관련있는 군사특기에 복무
- 전문특기병(어학병, 군악병 등 40여개 특기)
 -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사특기에 복무
-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같이 내무생활이 가능한 단위부대에서 복무
- 유급지원병
 -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분야에 일반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후 하사로 임용되어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복무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 또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 (지원가능 부대 : 1, 3군 예하 35개 부대)
- 연고지복무병
 - 생활 주소지 등 연고지에 위치한 전방부대에서 복무 (지원가능 연고지 : 1, 3군 예하 22개 지역)
- 맞춤형특기병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특기병으로 군복무
- 카투사
 - 주한 미군에 증강된 한국 육군 요원으로 미군들과 함께 군복무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유급지원병

해군/해병대 모집분야

- 해군 : 일반·기술병 13개 계열, 동반입대병, 유급지원병, 전문특기병 (군악병, 연예병, 특전병, 심해잠수병)
- 해병 : 일반·기술병 8개 계열, 육군지원병, 전문특기병(군악병)

- 공군 모집분야 : 일반·기술병 9개직종, 전문자관리병, 유급지원병, 전문특기병(의장병, 군악병, 동아리지도병, 정보보호병, 특수임무현병, 지식재산관리병, 태권도지도병)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지원일정 및 입영일

- 군별로 모집시기는 다르나 매월 초 지원가능 (※해군·해병대 : 매월 말)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모집안내 서비스 → 공지사항에 매월 공지)
- 모집응시에서 입영까지 약 3개월 소요
(전문특기병 및 어학병 등은 예외)

지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서 작성시 본인의 전공, 자격증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지원 가능특기를 조회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없이 지원가능특기 파악 요령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모집안내서비스 → 지원가능분야 검색

- 모집병 선발은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 육군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은 전산 추천으로 선발됨

인터넷 지원 요령

- 사전 준비사항
 - 병무청 나라사랑카드(신한카드) 공인인증서 또는 거래은행 공인인증서
-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모병센터 → 군지원서비스 → 정규모집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군별 선택 → 지원서 작성
- 지원기간 만료되고 1차합격자 발표 후 수험표 출력가능(육군, 공군)



맞춤특기병이란?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수료하고 해당 기술훈련과 연관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취업 등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육군 병 모집분야를 말함

제도 장점 및 혜택

• 입영 전

- 맞춤특기병 지원자는 기술훈련 받는 동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훈련비를 지원(전액 또는 일부)받게 되며 매월 40여만원 이상의 훈련수당도 지급 받게 됩니다.
-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은 취업을 집중적으로 관리받게 되며, 취업하게 되면 24세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입영을 원할 경우는 원하는 시기·부대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 복무 중에는 기술훈련 받은 분야에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며 자격 취득, 기술숙련, 검정고시, 경력도 쌓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역 후

- 군 복무를 마치면 취업했던 업체로의 복직도 보장되고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전역후 3개월내 취업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20~1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술훈련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일학습병행제, 취업사관학교 훈련수료자 포함)
- 훈련비(수당)지원

군 복무

- 원하는시기·부대로입영
- 자격취득·자기개발·경력 인정
- 취업 시 24세 까지 입영연기

취업

- 취업 지원, 취업 장려수당
- 전역후 복직 보장 및 취업 지원

육군 유급지원병이란?

'육군 유급지원병'이란?

육군의 첨단 장비 운용 및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문인력으로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복무하며, 하사 임용 후 일정 수준의 보수(월급 및 장려수당)를 받으면서 군 복무하는 제도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경우

- 복무기간 : 3년(병 의무복무기간+연장복무기간)
- 복무분야 : 첨단장비운용 전문직위
- 계급
 - 병 의무복무 기간 : 이등병~병장
 - 연장 복무기간 : 하사
- 보수 : 월 190여만원(하사 임용시부터 지급)
 - 하사3호봉 + 장려수당 90만원
- 지원자격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인자(2014년 기준 : '86.1.1. ~ '96.12.31. 출생자)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신체	• 신체등위 3급이상 ※ 단, 징병신체검사 미실시 접수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별도 실시 (1차합격후 지원서접수결과·수험표 조회표 출력시 신체검사 일자 및 장소가 표시됨) ※ 18세 모집병 신체검사 결과는 18세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용(단, 5~6급자는 예외) • 자격요건 등 -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전공학과 전문계고교 3년이상 수료하였거나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비 학위과정(기능사 양성과정 등) 6개월이상 수료자 및 인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 산하) 6개월이상 수료자 지원가능

- 모집특기 및 지원대상, 접수 및 선발전형확인
 - 병무청홈페이지 → 모병센타 → 안내 및 지원절차

현역복무중 유급지원병 지원하는 경우

- 복무기간 : 6~18개월 연장복무
- 복무분야 : 전투·기술 숙련 직위
- 계급 : 하사(연장 복무기간)
- 보수 : 월 130여만원(하사 3호봉+장려수당 30만원)

현역 모집병 중 카투사에 지원 입영하고 싶은데 방법은?

지원자격

- 징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위 1~3급)
- 어학성적이 정기시험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TOEIC	TEPS	TOEFL IBT	TOEFL PBT	G-TELP Level 2	FLEX
780점 이상	690점 이상	83점 이상	561점 이상	73점 이상	690점 이상
국내·외	국내	국내·외	국내·외	국내	국내

접수기간: 매년 9월경

제출서류

- 어학성적표 1부 : 국외 TOEIC 응시자(원본), TOEFL 응시자(사본)
– 어학성적은 접수일 다음날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함

선발일정 등

- 선발시기 : 매년 10~11월 경
- 선발방법 : 입영희망월별, 어학점수대별, 지원자 분포비율을 적용,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 공개선발
- 입영시기 : 선발되어 합격한 사람은 지원시 작성한 입영희망원 (다음해 1~12월)에 입영

유의사항

-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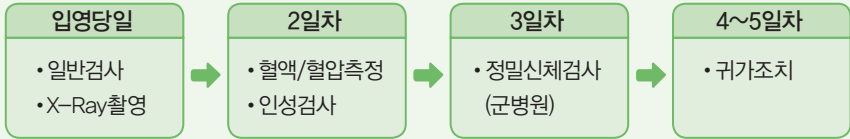


어학병 모집은?

- 신체요건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모집분야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어학능력 평가장소 –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아랍어: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앞 집결)
※ 모집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모집안내 서비스 → 공지사항(No.29-2014년도
입영대상 「육군 전문특기병(어학병포함)」 연간 모집 일정안내)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질병사유로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입영부대 신체검사 과정



※ 입영부대 또는 질병에 따라 신체검사 과정이 다를 수 있음

귀가 대상

-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 동일 질병 사유로 6개월 이내 반복 귀가 불가능

귀가자에 대한 행정조치

- **치유기간 3월 미만**
 - 치유기간 경과 후 가장빠른 입영일자로 다시 입영통지
- **치유기간 3월 이상**
 - 치유기간 경과 후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치유기간이 없이 귀가한 사람**
 - 즉시 재신체검사 통지
- **2회 이상 반복 귀가(치유기간 3월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이 치유기간 경과 후 다시 입영하여 재 귀가한 경우)**
 - 치유기간 미명시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치유기간 명시 : 명시된 치유기간 경과후 재신체검사 실시
 - ※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에 따라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처분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 훈련소 기간

- 육군훈련소와 향토사단(31, 32, 35, 37, 39, 50, 53사단)
 - 입영부대의 입소대대에서 1주일간 신체검사, 보급품 수령, 적성 검사를 받은 후 2주차부터 입영부대의 교육연대로 이동하여 5주간의 기본 신병교육을 받음
- 102보충대와 306보충대
 - 각 보충대에서 신체검사 후 입영 4일차(화요일 입영시 금요일)에 추첨에 의거 분류된 신병교육사단으로 이동, 입영 2주차부터 5주간의 기본 신병교육을 받음
 - ※ 5주간의 기본 신병교육과정 수료 후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부대별 특성에 맞는 전투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 : 심화교육과정은 부대 및 특기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르며, 후반기 교육에 편성된 특기병의 경우 병과학교에 입교하면 교육수료 후 복무하게 될 부대로 전속됨

■ 부대 배치

- ARS 1577-9600
- 육군본부 홈페이지 신병부대배치 조회
 - 입영부대별로 다르나 대부분 신병교육 5주차 금요일 확인가능
- 병무청 안내전화 1588-9090

입영 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 각 훈련소 홈페이지 방문

- 신병교육대 홈페이지(카페) 운영
 - 대한민국 육군(<http://www.army.mil.kr>) → 국민마당 → 신병사진보기
 - 훈련병 사진 탑재, 훈련소 생활 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아들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편지작성이 가능함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신병훈련 수료식 후 훈련병의 영외(군부대 밖)면회 실시

- 신병교육대 홈페이지(카페) 운영

- 면회 일정은 부대별로 상이, 각 부대에서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면회 실시
- 자대배치 되면 면회 가능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

개 요

-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특수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수련 또는 교육중인 사람을 사전에 선발·관리한 후 적기에 총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의무사관후보생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법무사관후보생

-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군종사관후보생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수의사관후보생

- 수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 공통사항 : 징병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장교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선발 및 병적관리

- **의무·법무·수의** : 병무청장이 선발, 지방병무청장이 병적편입·관리
 - 의무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수련기관의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군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제출
 - 법무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제출
 - 수의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수의과대학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제출
-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병적 편입된 사람은 취소불가
- **군종** : 국방부장관이 선발, 병무청장에게 통보, 지방병무청장이 병적편입·관리
 - 국방부장관의 선발 계획에 따라 종교단체의 장(학교의 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

◆ 입영

구분	입영대상	역종분류 및 입교 (입영)
의무사관 후보생	수련과정 수료자, 수련중단자, 연기사유 해소자 등	• 국방부장관이 군의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역종분류 (통상 2월 초순) - 2011년 입영자부터 국군의무학교 신체검사를 폐지,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에 의한 신체등위로 역종분류 * 현역 군의장교 분류자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 (통상 2월말, 8주 교육 : 학군교 5주, 국군의무학교 등 3주) * 보충역(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 국제협력의) - 육군훈련소 입영(통상 3월 중순, 4주 교육)
법무사관 후보생	사법연수원 이수자,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자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	• 국방부장관이 법무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역종분류 * 현역 법무장교 분류자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사법연수원출신 1월 하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월 하순, 9주 교육) * 보충역(공익법무관) - 육군훈련소 입영(4주 교육)
군종사관 후보생	국방부의 입영 계획에 따라 결정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4월 중, 10주 교육) ※ 보충역 없음
수의사관 후보생	수의과대학 졸업 후 수의사 자격 취득자	• 의무사관후보생과 동일함



03_보충역

- 사회복지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란 ?
- 사회복지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은 ?
- 사회복지요원이 “복무이탈” 했을 때에는 ?
-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
- 전문/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자격기준은 ?
- 전문/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
- 전문/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 군사훈련소집은 ?
- 전문/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언제 할 수 있는가 ?
- 전문/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란 ?

❖ **사회복무요원 대상** : 징병검사 결과 4급 보충역 처분받은 사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 **복무기간** : 24개월(4주 교육소집 포함)

❖ **복무방법**

– 집에서 출퇴근 근무하며 복무기관장 지휘감독을 받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입영방법은?**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 선택시기 : 사회복무요원 소집 전년도 12월 중

※ 취소공석(소집일자/복무기관)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추가 본인선택 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선택 절차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 →
 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 병무청에서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정하여 소집통지

•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제도**

– 선복무란?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있으나, 먼저 소집(복무기관 복무) 후 1년 이내 교육소집을 실시하는 것

– 선복무 대상자

• 30세 이상자(직권 선발)

• 정상소집 대상자 또는 재학생 입영연기자, 국외 입영연기자 중 신청자

•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으로서 선복무신청자(30일 이내)

– 절차

지방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신청서” 별도 제출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

☛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 교육소집 기간 : 4주

- 교육소집은 부대에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받는 것
- 주차별 교육내용(○○사단 기준)



구분	교육내용	비고
1주차	제식훈련, 경계, 정신교육	입영신체검사
2주차	사격, 정신교육	
3주차	주간행군, 화생방, 각개전투, 수류탄, 정신교육	
4주차	야간행군, 각개전투, 정신교육	4주차 금요일 퇴소(16:00)

※ 훈련병들의 상태와 체력에 맞게 훈련의 강도 조절

- 교육소집제외자 : 91년생 이후 정신과 4급, 문신/자해 4급 판정자 중 정신과로 3급을 받았거나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1년 이상 반복귀가자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교육의 종류

구분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
	기본과정	리더양성과정		
주관	병무청		중앙행정기관	병무청
내용	정신자세, 책임의식, 봉사정신 함양	자긍심 고취 및 성실 복무 동기부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복무 적응능력 배양	복무부실 예방과 성실 복무 유도
교육시기	소집 후 3개월 이내	사회복무요원대표자, 1년 이상 성실복무자	소집 후 3개월 이내	복무부실자 대상
교육기간	5일	2일	1 ~ 2주	2 ~ 4일

■ 전국 사회복무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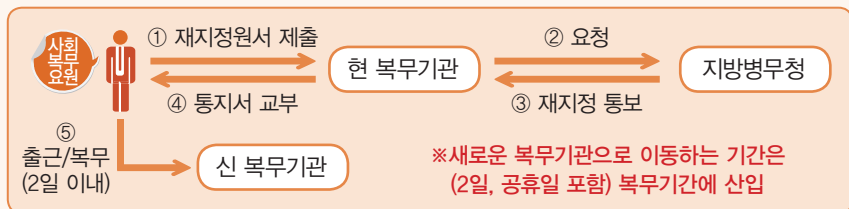
교육센터	교육대상 관할지방병무청 지역	소재지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강원영동	서울 관악 봉천동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수정동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중구 하서동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	경기 수원장안 울전동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시 서구 양2동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 중구 용두동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은 ?

복무기관 재지정(변경)

- **개요** :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기가 곤란한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및 처리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작성 신청

구비서류

- 주소지 이전 : 주민등록표 등본
 ※ 지방병무청장이 G4C를 통하여 주민등록지 이전 사항 확인으로 갈음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 진단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기준

- 정기 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 정기 노선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를 초과하는 지역
- 정기 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기타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질병,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 할수있는 임무(해당 분야의 업무배제)

- 기관지천식 : 우편업무보조, 차량단속, 철도·지하철 안전관리
- 아토피성피부염 : 차량단속, 산불·녹지 보호 및 감시
- 척추질환 : 우편업무보조, 시설경비, 산불·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분야
 ※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제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했을 때에는 ?

복무이탈자 등의 처리

- **개요**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처리

■ 복무이탈 사유별 처리기준

구 분	사 유	처 리
복무이탈 (법제33조)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근무명령 위반 (법제33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3회 이내 경고 :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4회 이상 경고 :
임무수행 태만 행위 (영제65조 의3)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한 때	• 7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 8회 이상 경고 :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1회 경고 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복무지도 교육 중 대리 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복무중단이란?

- 범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복무에서 배제하는 것
 - 구속된 경우
 -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제외)를 받은 경우
 -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산하여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 이탈한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

❖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

•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 개요 : 복무 중 질병, 수형, 전·공상,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또는 감면사유 등의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질병 : 병사용 진단서



병사용진단서 인정범위

- 병무청 지정병원(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 수술을 받은 병원
- 1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 전·공상 : 국가유공자 증명원
- 수형 :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수용증명서
- 생계유지곤란 : 가사상황신고서 등 병역감면 서류

• 분할복무 제도

- 개요 : 복무 중 질병치료나 생계지원,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내(본인 질병치료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1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
 - 질병 이외 :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서류

– 재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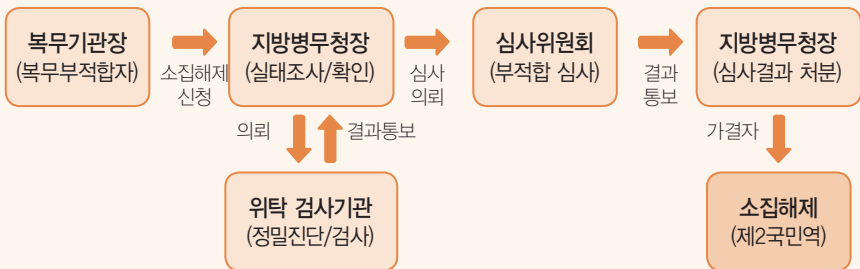
-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 복무중단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경유하여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

- 개요 : 질병·심신장애, 수형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전문/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자격기준은?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 신청대상(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학력	연구분야
석사이상 학위취득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등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자연계대학원 – 선발시험 합격자 (단, 과학기술원 및 보충역은 선발시험 제외)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 지정업체인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함

– 의무복무기간 : 3년(박사과정 수학기간은 산정 제외)

산업기능요원

• 현역입영대상자(의무복무기간 : 34개월)

– 신청대상 : 학력에 맞는 국가 기술자격 / 면허를 가진 사람(대학원 합격자는 신청불가)

〈학력별 기술자격증 등급 기준표〉

학력	해당기술자격 등급
대학교 4학년 졸업	기사 이상
전문대 졸업 대학교 3~4학년 중퇴·휴학자	산업기사 이상
고졸이하자 대학교 1~2학년 중퇴·휴학자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이상

※ '11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무복무기간 : 26개월)

– 신청대상 : 학력 불문 기술·자격이 없어도 가능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도 편입가능

전문/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

📌 병역지정업체 정보제공

• 전국 병역 지정업체 조회 및 배정인원 확인

– 병무청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국·실별주요정보
→ 사회복무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

※ 근무할 업체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병역 지정업체 모두 가능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로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역일터(<http://iljari.mma.go.kr>)에서 구직 신청가능



병역일터란?

정확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구인·구직에 도움을 주고, 취업알선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료 취업알선 사이트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구축한 시스템

– 메뉴구성



–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활용



전문/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 군사훈련소집은 ?

군사훈련 소집 시기

- 가급적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고
- 희망원인이 미달된 경우에는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



군사훈련 소집일자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민원 → 산업교육소집일자/부대조회

군사훈련 기간: 4주

- 군사훈련 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

군사훈련 장소

- 육군훈련소 또는 향토사단



군사훈련장소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찾아가는길 → 입영부대가는길

군사훈련 소집 기간 중 임금 지급

- 병역지정업체 사규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결정

군사훈련 소집 연기

- 연기사유
 - 질병, 주요업무, 가족 위독 및 사망, 각종시험응시 등
- 신청절차
 - 입영일 5일전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연기신청
 - 병역 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신청서 제출



전문/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언제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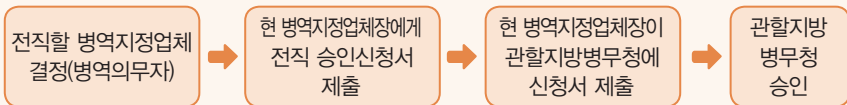
☛ 당연전직(의무적으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야 함)

- 종사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종사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 승인전직(승인을 받고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음)

- 일정기간(전문 : 1년 6개월, 산업 : 1년) 이상 복무한 경우
- 통틀어 3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편입당시 지정분야 등에 부득이하게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신고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고자에 한함)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를 원할 경우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려는 경우

☛ 전직절차



☛ 전직이 안 되는 경우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회수)된 병역지정업체
- 전직 시 핵심연구과제 중단 또는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이 근무하는 업체
- 동일분야 연구소 전직 시 핵심기술 유출위험이 있는 경우(전문연구요원)
-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산업기능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편입취소 사유

-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훈련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전직허용기간인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수확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등

편입취소 시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함
- 복무단축 : 군사훈련소집기간+군사훈련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편입취소 유보

• 유보대상

-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사람

• 유보절차

- 출원기간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서 또는 소송제기 서류

• 유보결과 처리

- 적법·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본인이 원할 경우 전직)
- ※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04_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훈련은?

❖ 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수요를 위하여 사전에 병력동원 소집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에 대해 동원절차를 숙지 하고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해서 평시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원훈련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예비군 편성은 언제까지 하나요?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까지 편성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편성됩니다.
- 그러나 사회복지요원 등 보충역 중 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 제2국 민역, 병역 면제 받은 사람과, 현역 간부가 전역 시 퇴역되거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4년차 까지이며, 지정부대 여건에 따라 5~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됩니다.

❖ 어디로 동원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나요?

- 동원훈련 장소는 병무청에서 보내는 동원훈련통지서(파란색)에 기재되어 있으며, 통지서는 등기우편 또는 E-mail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원훈련일자와 교통편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동원훈련 참가시 복장과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 복장 : 예비군복, 예비군모, 전투화, 허리띠, 명찰 패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나라사랑카드 중 1개 지참
- 준비물 : 본인 계좌번호 숙지(여비 입금용), 세면도구, 수건, 속옷 등

◆ 대학생인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은 학교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8시간)을 받게되며, 2박3일 동안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은 제외 됩니다.
- 그러나 휴학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나 유급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부대로 편성되어 일반예비군과 동일하게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연기원서를 제출(공인인증서 필요)하거나 통지서를 송부한 각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연기 사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무단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동원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즉시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동원훈련은 절대 무단불참하시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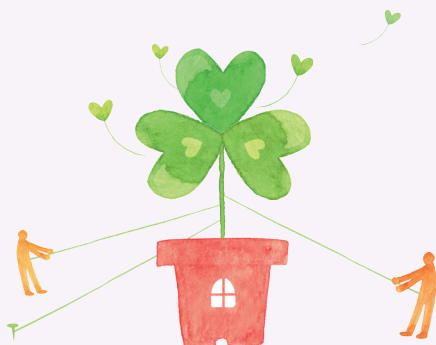


◆ 전역 후에 교통사고로 다쳐서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를 당해서 계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 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면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예비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 경우에 예비군 복무가 힘들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예비군 등 병역의무는 언제 종료가 되나요?

- 예비역 및 보충역병, 제2국민역은 41세에 병역의무가 종료(면역)되며,
- 예비역 및 보충역 간부는 현역계급별 연령정년이 초과하면 병역의무가 종료(퇴역)됩니다.





05_ 기타

-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
-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제도란 ?
-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

제도개요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①부양비율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 처분 (제2국민역)

신청대상 및 제출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기일 5일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수시(20세이후 징병검사를 받은사람은 그 해)
 - ※재학연기중인 사람은 재학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출원 가능

서류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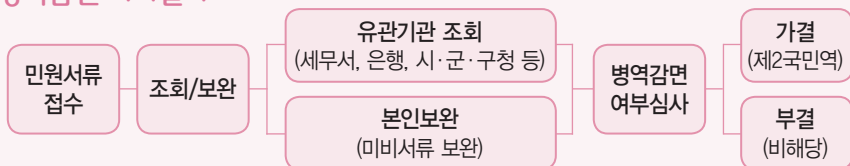
거주지 지방병무청

현역복무중인 사람은 입영당시 병적관리 지방병무청

※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자 포함)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복무중 수시

병역감면 처리절차



제출방법

- 병적지(현역병) 또는 거주지(사회복무요원)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재신체검사, 면제, 감면 신청" →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자가진단)" 코너 →
 지방병무청 문의 → 구비서류 제출·접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

제도개요

- 병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허가대상자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2014년기준 1989년 이전 출생자)
 -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요원, 공보의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라도 국외여행 허가대상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

- 단기여행
 -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횟수 제한은 없음)
 - 국외 출국 상태에서 연장시에는 25세가 되는 해에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단, 단기여행사유로 출국하였을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유학
 - 대학교 : 4년제는 24세, 5년제는 25세, 6년제는 26세(단, 의·한의·치·수의과 대학은 27세)
 - 대학원 : 석사2년제는 26세, 석사2년제 초과는 27세, 박사는 28세(단, 의·한의·치·수의과 석사과정은 28세)
- 연수·훈련 :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국외이주 : 37세까지(영주권·시민권 취득, 부모와 5년이상 해외 거주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접수
- 인터넷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제민원 → 국외여행 허가신청(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
 - ※ 국외에서 기간연장 허가 신청시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 신청시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함



허가절차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병역의무자) → 병역사항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처리(지방병무청) → 허가사항 전산입력 후 허가번호 부여(지방병무청) → 국외여행 허가서 교부(지방병무청) → 의무자 여권발급(외교부) → 의무자 출국

허가제한 대상

-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자,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국외이주자로서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자,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신체손상이나 사위 행위를 한 자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제도개요

-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징병검사와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원대상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승선)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민원신청 종류

- 우선징병검사 신청
- 국외입영신청(현역/사회복무), 국외입영신청 취소(현역/사회복무)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취소

출원방법 및 절차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취소) 신청 → 민원신청 종류 중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선택 출원

*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PIN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처리결과 통보

- 국외체재중인 본인에게 E-mail로 통보하며 국내 친권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

병역안내,

스마트하게 만나보세요!



〈스마트앱 다운로드〉

■ 스마트 앱 서비스

구 분	내 용
나의병역	일자, 병역기본사항, 민원처리결과 조회
군지원	모집계획, 지원현황, 지원가능분야, 모병합격자조회
알아보기	적성찾기, 병역일정, 일자리, 약도, 공지사항 안내
복무제도	사회복무, 전문·산업, 승선예비역, 특별보충 복무제도 안내
보관함	저장정보, 동원소집통지서, D-Day, PUSH수신정보 조회
홈페이지	병무청 모바일홈페이지 이동
상담센터	전화상담, 문자상담
앱소개	앱소개, 개선안내, 신규서비스 신청
환경설정	주민번호등록, PUSH설정, D-Day설정, 인증서관리

■ 스마트 앱 이용방법

- 앱 스토어에서 '병역안내'로 검색 후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사용
 - 앱 스토어 : 애플-스토어, 구글마켓, 올레마켓, T-스토어, OZ스토어
-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 일자조회, 병역기본사항조회, 민원처리결과 조회, 모병합격자 조회, 적성찾기, 동원소집통지서





병무청 주소 / 전화번호

청 별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병무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302-701	042-481-2971
중앙신체검사소	대전 동구 침복로 10	701-310	053-607-0305
병무민원상담소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302-701	1588-9090
서울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150-057	02-820-4518
부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613-707	051-667-5325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동내로 63	701-310	053-607-6314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징병검사장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442-704 402-041	031-240-7313 032-870-060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501-190	062-230-4316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301-706	042-250-4315
강원지방병무청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	200-948	033-240-6314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남사로 33	361-826	043-270-1313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560-110	063-281-3313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641-709	055-279-9315
제주지방병무청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690-755	064-720-3216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480-866	031-870-0321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 강릉시 울곡로 2705	210-928	033-649-4214



병무민원 **전 화** 서비스 1588-9090

병무민원 **인터넷** 서비스 www.mma.go.kr